5차시 우리 교실 속으로 들어온 저작권

5차시는 교실 환경 속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을 찾아보는 탐구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일상 생활과 저작권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교실 환경 속에서 어떤 저작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즐겁게 저작권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 학습 목표

- ▶ 교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 교실 안의 저작물 발견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준비물

- ▶ 학생용 활동 자료, 필기 도구, 필요한 경우 색 사인펜 또는 색연필
- ▶ 포스트잇(모둠별로 다른 색깔로 준비한다). 간단한 상품

■ 유의 사항

- ▶ 이번 차시는 저작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그러 므로 세부적인 저작물에 대한 탐색은 이어지는 다음 차시들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법 조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학생들의 주요한 생활 공간인 교실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함 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 되도록 많은 저작물을 찾아보는 것을 위주로 활동을 지도한다. 저작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해도 많이 찾아낸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
- ▶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소란을 염려하여 다른 특별 교실로 옮겨 활동을 지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 과정

이 포스트잇으로 무엇을 할까?

- · 4~6인을 1모둠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둠을 편성한다.
- · 오늘의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선생님이 발견한 저작권

- · 1단원에서 학습했던 저작권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 ·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교과서는 교과서 저자들의 저작물이 고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예를 들 어 설명한다.



찾아보자, 저작물

- · 모둠별로 최대한 많은 저작물을 찾아낸다.
- 교실에서 발견한 저작물에 포스트잇을 붙인다.



함께 보자, 저작물

- · 어느 모둠이 어떤 사물에서 저작물을 발견하였는지 발표하 는 시간을 갖는다.
- · 가장 많은 저작물을 발견한 모둠에 상품을 준다.



저작물 분류하기

- · 발견한 저작물을 분류하는 활동을 해 본다.
- · 칠판에 저작물의 종류를 적고 학생들이 발견한 저작물을 분 류해서 적어본다.
- ·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저작권 보 호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활동 내용

▶ 들어가기

이 포스트잇으로 무엇을 할까?

- 1. 학생들 4~6인을 한 모둠으로 편성한다.
- 2. 모둠별로 서로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나누어준다.
- 3. 교실 속에 저작권과 관련된 시물을 발견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진행자를 위한 팁

· 한 모둠이 포스트잇을 붙이면 다른 모둠은 그 사물에는 포스트잇을 붙일 수 없다는 규칙을 설명한다.

선생님이 발견한 저작권

1. 교과서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교과서는 교과서 저자들의 저작물이며, 그에 따른 저작권 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 밖에도 우리 교실에는 수많은 저작물과 저작권들이 숨어 있 답니다. 찾아보세요. 발견한 저작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주세요. 가장 훌륭하게 활동하는 모둠에게는 상품도 있답니다."

▶ 실행하기

찾아보자, 저작물

- 1. 모둠별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물이 무엇인지 토의해 본다.
- 2. "준비 \sim 시작!"하는 신호와 함께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붙이 도록 한다.
- 3. 5분이 지나면 활동을 멈추도록 한다.
- 4. 다시 모둠별로 토의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 5. 다시 "준비 ~ 시작!"하는 신호와 함께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추가로 포스트잇을 붙인다.
- 6. "그만!"하는 신호와 함께 탐색 활동을 마친다.

진행자를 위한 팁

· 학생들이 활동적인 그룹이라면 먼저 포스트잇을 붙이기 위해 소란스러워지거나 다칠 수도 있다. 순서대로 모둠의 이름을 부르고 그 때마다 하나의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때, 포스트잇 붙일 곳을 찾지 못한 모둠이 계속 탈락하면서 마지막까지 남는 모둠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함께 보자. 저작물

1. 모둠별로 자기 모둠이 붙인 포스트잇의 의도를 설명한다.

컴퓨터 -> 컴퓨터에 깔린 수많은 프로그램들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어요 그림 ->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학가의 저작권이지요

달력의 사진 -> 사진은 사진 작가의 저작물이어요.

- 2.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건 저작권이 아니야'라는 의견을 내 놓을 수도 있다. 자유롭게 의견이 표출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발견한 저작권의 수 × 10으로 계산하여 모둠별로 중간 점수를 부여한다.

진행자를 위한 팁

- · 발표가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발표한 내용은 생략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 모둠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저작물 분류하기

- 1. 선생님이 칠판에 저작물의 종류를 적는다. 〈교사용 지도 자료 1〉참조
- 2. 발견한 저작물을 종류에 맞추어 분류해 본다.
- 3. 항목에 맞게 분류할 때마다 10점씩 부여한다.

진행자를 위한 팁

· 그 밖에도 연극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등의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한정하여 칠판에 적도록 한다.

▶ 마무리하기

- 1. 모둠별 취득 점수를 최종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모둠에 상품을 준다.
- 2. 앞으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학습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앞으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사진/만화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 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 세요."

진행자를 위한 팁

- ·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대신 칠판에 점수판을 만들어 두고 상표를 붙여 주거나 막대그래프 의 키를 계속 키워 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리웨어 가운데에는 모둠별로 점수를 기록하는 플래시 프 로그램도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교실에서 발견한 저작물

. 학생용 활동 자료 1

학교	학년	바	이름

교실에서 찾은 저작물을 다음의 저작물 종류별로 분류해 기록해 보세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저작물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그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 종류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법 제4조), 이것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어서 어느 저작물이 여기에 예시된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표현 방법에 따라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 류는 저작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일차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

말과 글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어문저작물은 문자나 기호로 기록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구술 또는 구연 상태의 것도 포함된 다 그리고 읽거나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에 의한 표현은 물론 암호나 점자 또는 수학 공식처럼 비록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표현 방식에 의해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것이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 다. 따라서 악곡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이다. 김소월의 시가 가곡으로 작곡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된다. 이 경우에 가사는 어문저작물이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되기도 한 다.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악보에 그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부르는 노래도 음악저작물에 해당된다.

▶ 연극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중 대사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연기 그 자체는 실연에 해당한다. 동작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서술, 무보로 기록할 수도 있다.

▶ 미술저작물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디 자인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도 그것이 산업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 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역시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건축저작물

건축물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 도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물의 외관은 물론 각종 구성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배치된 전

¹⁴⁾ 임원선, 「(개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p.60~75.

체적인 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장식품과 같은 개별 구성 요소들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건축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건축물에 의해 표현되는 예술성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청사진과 같이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 셔터 속도 등 촬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진이 좌우되며 촬영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점 등에서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기계적으로 촬영되는 증명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영상저작물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소리가 나고 안 나고에 관계 없이 영화처럼 동영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의 화면도 이에 해당한다. 뮤직 비디오의 경우, 주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상을 우선시하여 영상저작물로 분류하는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화의 한 장면 등과 같이 정지된 화상을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극이나 음악회 등을 촬영한 자료는 연극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담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 설계도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에 속하기도 한다. 도형저작물의 경우,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지시나 명령어만을 말하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술서나 프로그램 명세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이 외에도 저작물의 작성 방법에 따라 다음 세 종류의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차적저작물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나 외국의 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

우에 그 드라마나 영화 또는 번역된 문학 작품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그 밖에 축약 또는 발췌 등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한번 번역된 자료를 재차 번역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자, 즉 1차 번역자뿐만 아니라 원작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진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무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한다. 그리고 편집물 중에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창작성이 있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만 미친다. 예를 들어, 가입 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나열한 인명부 전화 번호처럼, 방대한 편집물의 경우라도 소재의 선택 과 배열에 있어서 아무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저작권으로는 보호될 수 없다. 또 . 그 배 열에 창작성이 있어서 보호되는 편집물이라 합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편집물을 활용하여 다른 배열을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 한다. 예를 들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등의 예외가 적용되다

